# 「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(2024~2028)」 수립 개요

'24.5.29.(수) / 국가도서관위원회

## □ 추진 배경

○ 「제3차 종합계획(2019~2023)」 만료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는 **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「제4차 종합계획(2024~2028)」 수립 및 심의 · 확정**

* 법적 근거 : 「도서관법」 제14조(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), 2007년~

* 추진 경과 : 기초연구('22.11.~'23.5.), 의견수렴('22.12.~'23.2.), 전문가 워크숍(3.17)·포럼(4~6월), 사회관계장관회의(7.19), 의견조회(9월)·설명회(10.19), 공문 통보(11.17), 권역별 설명회(12월), **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발족('24.4.11.) 및 제1차 전체회의 심의·확정('24.5.29.)**

## □ 제3차 종합계획(2019~2023)의 성과와 한계

**※ 제3차 종합계획 추진 개요**

○ **비전/추진과제 :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/ 4대 전략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**

○ **추진기관 : 40개 기관** (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, 국회/법원도서관)

- **(전국도서관 현황)** 관련 기관별(관종별) 도서관 **22,676개**('23.12월 기준)
- **(기관별 정책과제)** △**문체부:** 도서관 정책 전반, 국립중앙도서관, △**교육부:** 학교·대학도서관, △**국방부:** 병영도서관, △**법무부:** 교정시설도서관, △**지자체:** 공공·작은도서관 등

○ **투자실적 : 지난 5년간('19~'23)** 기관 합산 재정투자 규모 **총 5조 3,510억 원**

- '19년 7,780억 → '20년 1조 3,840억 → '21년 1조 1,548억 → '22년 1조 1,068억 → **'23년 9,275억***

*__중앙__ 문체(411억), 교육(271억), 국방(164억) 순 / **시도** 경기(1,253억), 경북(1,074억), 서울(792억), 전북(487억) 순

○ **(성과)** △공공도서관 확충('18년 1,096개관→'23년 1,270개관, 15.9%) 등 **인프라 확대**, △공공도서관 전자자료 확대('18년 19백만종→'22년 84백만종, 342%) 등 **온라인자원 증가**, △분권형 도서관 체계 확립('21~'22년 도서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) 등 **제도 개선**

○ **(한계)** △감염병 등 **재난상황에서 도서관서비스**의 지속적 운영 미흡, △**인구감소·독서율 저하**로 도서관 이용자 감소 △**인공지능기술 등 정보서비스 환경변화**에 대응 시급

⇒ **(제4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)** △코로나19 이후 **'뉴노멀 시대' 대응** △**고령화·저출산·다문화·지역소멸** 등 사회 변화 반영 △**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본격화**에 대응 △미래를 준비하는 **도서관 정책환경 역량 강화**

## □ 제4차 종합계획(2024~2028) 비전 및 정책목표

| 비전 |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| | |
|---|---|---|---|
| 핵심가치 | 따뜻한 동행 | 공동체 성장 | 지속가능한 미래 |

| 정책목표 1 | 정책목표 2 | 정책목표 3 | 정책목표 4 |
|---|---|---|---|
|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, 모두의 도서관 | 공동체 활력, 연대·협력 플랫폼 | 국가 경쟁력 강화, K-지식자원 보고 | 미래를 위한 준비, 도서관 혁신 |

## □ 제4차 종합계획(2024~2028) 12대 핵심과제

**1. 세계시민성을 지향하는 도서관서비스**

- ○ **(창의·공감을 위한 인문역량 제고)** ▲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▲문화·학습·체험 프로그램 확대
- ○ **(디지털 일상 향유 역량 강화)** ▲디지털 시민성 구현 ▲디지털 창작·협업 프로그램 확대

**2. 국민 체감형 지식정보서비스 확대**

- ○ **(공공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)** ▲공공정책·연구정보서비스 강화 ▲의회·법률정보서비스 고도화
- ○ **(교육·학술정보서비스 확대)** ▲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▲대학도서관 학술연구서비스 강화

**3.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서비스**

- ○ **(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)** ▲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강화 ▲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
- ○ **(특수환경 거주자 도서관서비스 확대)** ▲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 서비스 개선 ▲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강화 ▲환자·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

**4. K-도서관 문화 랜드마크화**

- ○ **(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)** ▲도서관 문화클러스터 구축 ▲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
- ○ **(일상 속 체류형 도서관 환경 조성)** ▲도서관 공간 혁신 ▲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

**5. 지역 활력을 높이는 특화서비스 제공**

- ○ **(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)** ▲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▲세대공감 프로그램 확대
- ○ **(사람과 마을을 잇는 지역아카이브 구축)** ▲도서관 중심의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▲문화매개자를 활용한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 및 추진

**6.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기관 연대·협력**

- ○ **(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)** ▲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연계 서비스 ▲도서관 리빙랩 조성
- ○ **(도서관 융합서비스 확대)** ▲지식문화기관 연대 서비스 발굴 ▲도서관·지역출판·서점 상생협력

**7. 국가지식문화유산의 체계적 축적**

- ○ **(한국자료의 포괄적 수집)** ▲온·오프라인 자료의 수집 및 외연 확장 ▲특화형 한국자료의 조사·발굴·수집 확대
- ○ **(후대를 위한 보존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)** ▲국가문헌보존관 건립 및 국가자료 보존기능 강화 ▲디지털 보존·관리 전략 수립 및 아카이브 구축

**8. 지역 실용자원의 공동수집·보존**

- ○ **(지역자료 수집력 강화)** ▲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 ▲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
- ○ **(공동보존서고 구축·운영 내실화)** ▲공동보존 기반 마련 ▲장서의 과학적 관리·운용

**9. 가치창출형 지식자원 공유·연계**

- ○ **(개방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)** ▲공유·개방형 저작물 지속적 발굴 ▲도서관자료의 통합 활용체계 구축
- ○ **(도서관 데이터 공유 및 연계)** ▲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확립 ▲데이터 연계 활용성 강화

**10. 도서관 디지털 혁신**

- ○ **(도서관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)** ▲데이터 기반 운영시스템 고도화 ▲지능형 업무지원시스템 개발
- ○ **(신기술 융합형 도서관서비스 확대)** ▲실감형 도서관서비스 ▲AI 활용 도서관서비스

**11.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**

- ○ **(사서 전문성 개선·강화)** ▲사서 자격제도 합리적 개선 ▲사서 재교육 강화
- ○ **(미래 전문사서 양성체계 재구축)** ▲사회수요 맞춤형 직무역량 개발 ▲미래 전문사서 양성

**12. 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**

- ○ **(지역 주도형 도서관 정책체계 확립)** ▲광역대표도서관 역할 체계 확립 ▲공공도서관 운영 책임성 강화
- ○ **(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)** ▲정책 거버넌스 구축·운영 ▲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

## □ 제4차 종합계획(2024~2028) 주요 기대효과

| 구분 | | 2023년 | | 2028년 |
|---|---|---|---|---|
|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, 모두의 도서관 | 도서관의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<br>(생활문화독서 동호회 운영 수(관당)) | 4,108개<br>(3.3개) | ➡ | **7,000개**<br>(5개) |
| | 생애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활성화<br>(참여 공공도서관 수) | 885개관<br>(73.7%) | ➡ | **1,200개관**<br>(85.7%) |
| |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강화<br>(연간 출판량 대비 대체자료 제작 비율) | 21%<br>(1.2만 건) | ➡ | **30%**<br>(1.8만 건) |
| | 사회적 약자 도서관서비스 확대<br>(고령자, 다문화가족, 사회병리 프로그램 지원) | - | ➡ | **100개관**<br>(매년) |
| | 특수환경 거주자 도서관서비스 확대<br>(지역 의료시설과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) | - | ➡ | **17개**<br>(시도단위) |
| 공동체 활력, 연대·협력 플랫폼 |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<br>(관당 봉사대상인구) | 1,270개<br>(4.2만 명) | ➡ | **1,400개**<br>(3.7만 명) |
| | 인구감소지역 유휴공간 활용<br>(체류형 독서문화·창작공유 공간개선 지원) | - | ➡ | **200개소** |
| | 지역공동체를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<br>(지역특화·세대공감 대표 프로그램 운영) | - | ➡ | **17개**<br>(시도단위) |
| |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<br>(도서관 리빙랩 조성·운영) | - | ➡ | **17개**<br>(시도단위) |
| | 도서관 융합서비스 확대<br>(도서관·지역출판·서점 상생협력 운영) | - | ➡ | **17개**<br>(시도단위) |
| 국가 경쟁력 강화, K-지식자원 보고 | 국가장서 디지털 보존 및 활용<br>(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) | 200만 책 | ➡ | **250만 책** |
| |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확대<br>(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편성비율) | 2.5% | ➡ | **3%** |
| | 공동체 기억의 수집·공유·확산<br>(디지털 아카이브 '코리아 메모리' 구축) | 24만 건 | ➡ | **30만 건** |
| | 지역자료 수집력 강화<br>(광역대표도서관 납본·보존센터 설치) | - | ➡ | **17개**<br>(시도단위) |
| | 기업·연구자를 위한 K-콘텐츠 창작·연구지원<br>(텍스트데이터 및 디지털컬렉션 서비스) | 텍스트데이터 1.4만 건<br>디지털컬렉션 218식 | ➡ | **텍스트데이터 1.8만 건<br>디지털컬렉션 275식** |
| 미래를 위한 준비, 도서관 혁신 | 도서관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 적용<br>(인공지능, 클라우드,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) | 기초연구 | ➡ | **AI 활용 서비스 및 지능형 업무지원** |
| | 온·오프라인 연계 '가상 국립도서관' 구축<br>(도서관 가상 모형(Digital Twin) 서고 구현 등) | 기초연구 | ➡ | **가상 국립도서관 구축·운영** |
| | 공공도서관 사서 직무교육 강화<br>(관당 직무교육 건수 및 시간(평균)) | 12건<br>(73시간) | ➡ | **20건**<br>(100시간) |
| | 사회수요 맞춤형 미래사서 양성체계 구축<br>(AI 서비스를 위한 '데이터 전문사서' 시범 양성) | - | ➡ | **100명** |
| | 도서관위원회 '국제협력전문위원회' 구성<br>(도서관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플랫폼) | 구성안 마련 | ➡ | (매년) **워킹그룹 및 국제세미나 개최** |

## 붙임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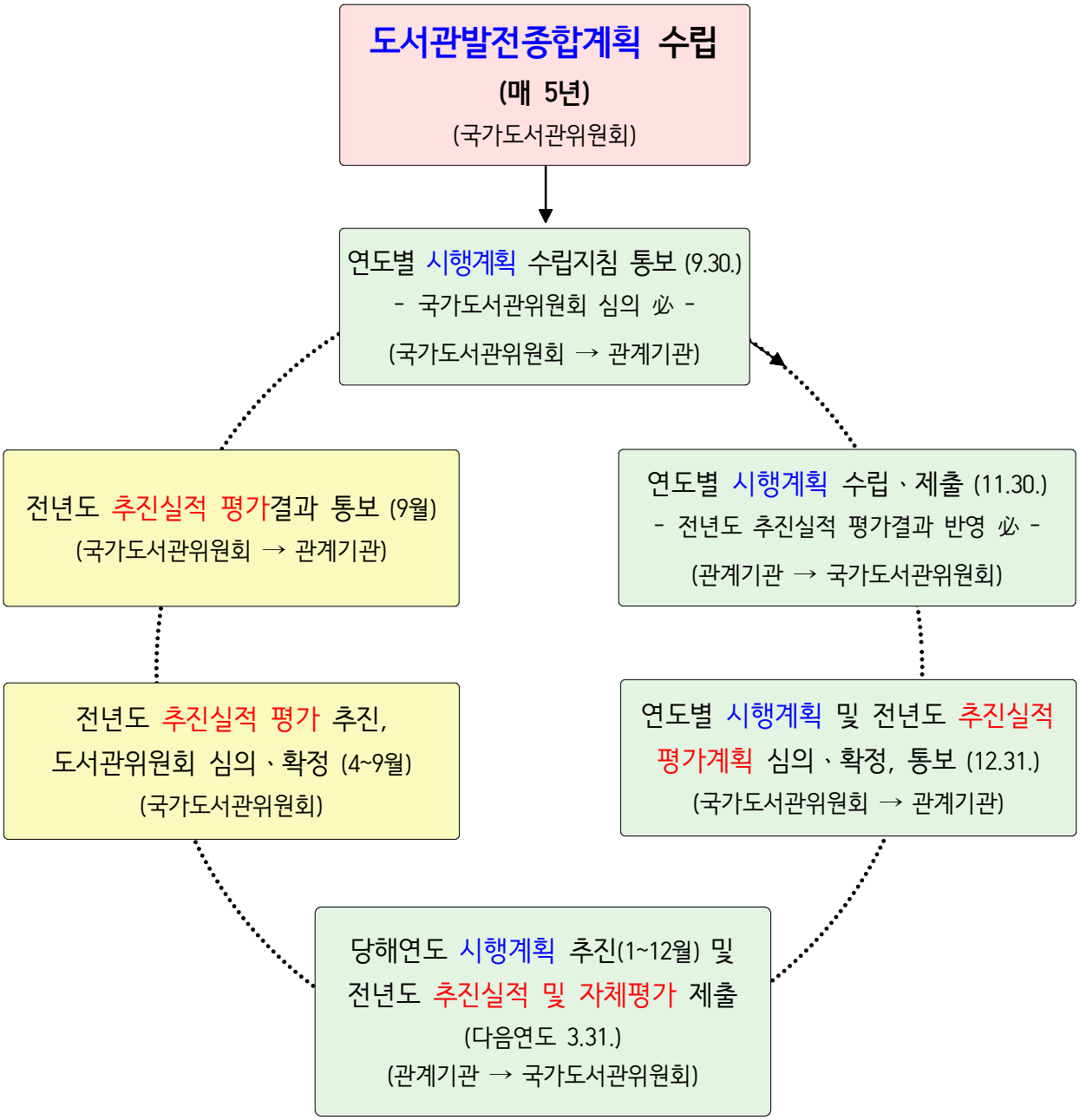


▷ **재원의 조달(도서관법 제16조)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**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 가능

▷ **국회보고(도서관법 제54조) : 국가도서관위원회**는 종합계획,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확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

## 참고 관련 법령

| 구분 | 도서관법 | 도서관법 시행령 |
|---|---|---|
| (위원회)<br>종합계획 수립(5년) | **제14조(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)**<br>①국가도서관위원회 **위원장은**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**5년마다** 도서관발전**종합계획**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**수립하여야 한다.**<br>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2. 1. 18.><br>1.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<br>2.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br>가.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<br>나.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<br>다.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<br>라.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<br>3.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<br>4.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| |
| (위원회)<br>시행계획 지침통보 (9.30) | | **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**<br>①국가도서관위원회의 **위원장은**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, 이를 **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**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**시·도지사**"라 한다)에게 **통보해야 한다.** |
| (부처·시도)<br>시행계획 수립·추진 (1~12월) | **제1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**<br>①**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**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**시·도지사**"라 한다)는 **종합계획에 기초**하여 매년 **연도별 시행계획**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**수립·추진**하여야 한다. 이 경우 **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**할 수 있다. | |
| (부처·시도)<br>시행계획 (11.30)<br>추진실적 (3.31)<br>위원회 제출 | **제1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**<br>②**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**는 해당 연도의 **시행계획** 및 전년도 **추진실적**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**위원장에게 제출**하여야 한다. | **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**<br>②**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**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**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**하여 **매년 11월 30일까지** 국가도서관위원회의 **위원장에게 제출**해야 한다.<br>1.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<br>2.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<br>3.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<br>4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|

| 구분 | 도서관법 | 도서관법 시행령 |
|---|---|---|
| | | **제10조(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)**<br>③**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**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**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**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**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** |
| | | **제10조(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)**<br>①**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**는 **매년 3월 31일까지** 시행계획의 **전년도 추진실적**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**위원장에게 제출**해야 한다. |
| **(위원회)**<br>**시행계획 종합·통보 (12.31)**<br>**추진실적 평가·통보 (4~9월)** | **제1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**<br>③국가도서관위원회 **위원장**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**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**하여야 한다.<br>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**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**<br>③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**시행계획을 종합**하여 **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**해야 한다.<br><br>**제10조(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)**<br>②국가도서관위원회의 **위원장은**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**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**해야 한다.<br>1.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의 부합도<br>2.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<br>3.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<br>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 |
| **(부처·시도)**<br>**계획추진 예산근거** | **제16조(재원의 조달)**<br>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**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**<br>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6조에 따른 **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** | |
| **(위원회)**<br>**국회보고** | **제54조(국회 보고)**<br>국가도서관위원회 **위원장은 종합계획**, 해당 연도 **시행계획** 및 **전년도 추진실적**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**국회** 소관 상임위원회에 **보고**하여야 한다. | |

## 붙임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비교

### □ 제1차~제4차 계획의 차이점

○ (1차 계획)은 공공도서관 확충 등 **양적인 증가에 초점**을 두었으며

○ (2차 계획)은 도서관 **서비스 질 향상**에

○ (3차 계획)은 수요자 중심의 계획으로 **도서관의 핵심가치***를 정립하고

*사람에 대한 포용성, 공간의 혁신성, 정보의 민주성

○ (4차 계획)은 사회문제 대응 등 **도서관의 역할 확장***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에 초점을 둠 ***따듯한 동행, 공동체 성장, 지속가능한 미래**

**< 제1차~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개요 >**

| 제1차(2009~2013) | 제2차(2014~2018) | 제3차(2019~2023) | 제4차(2024~2028) |
|---|---|---|---|
| ·**도서관 인프라 확충** | ·**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** | ·**도서관 가치 정립** | ·**도서관의 역할 확장** |
| ·도서관 **시설** 및 자료 지속적 **확충 중심** (도서관 건립 등) | ·다양하고 **수준 높은** 도서관 **서비스 제공** (시설·자료·인력 등) | ·개별도서관의 **창의적 서비스** 발굴 유도<br>*사람에 대한 포용성, 공간의 혁신성, 정보의 민주성 | ·**삶의 공간으로** 도서관 서비스 **확장**<br>*따듯한 동행 공동체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 |
| ·**관종별 과제 중심**<br>- 8대 추진전략, 29개 중점과제, 71개 추진과제 | ·**관종별 과제 중심**<br>- 3대 정책목표, 7대 추진전략, 92개 추진과제 | ·**관종별 과제 최소화**<br>- 4대 전략방향(목표), 13개 핵심과제, 36개 추진과제 | ·**정책기관별 과제 중심** (중앙 23, 시도 17)<br>- 4대 정책목표, 24개 추진과제, 51개 실행계획 |
| ·**도서관 중심의 계획**<br>- 도서관진흥을 위한 방향 제시 | ·**도서관 중심의 계획**<br>- 도서관서비스 선진국 목표로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| ·**수요자 중심의 계획**<br>- 개인, 공동체, 사회의 성장을 지원 도서관 서비스 제시 | ·**정책 중심의 계획** (국정과제 등 연계)<br>- 국정기조 구현을 위한 도서관정책 방향 제시 |
| · ~ **'12년 공공도서관**<br>- 도서관 수 828개관<br>- 관당 인구수 6.1만명 | · ~ **'17년 공공도서관**<br>- 도서관 수 1,042개관<br>- 관당 인구수 4.9만명 | · ~ **'22년 공공도서관**<br>- 도서관 수 1,236개관<br>- 관당 인구수 4.2만명 | · ~ **'28년 공공도서관**<br>- 도서관 수 1,400개관<br>- 관당 인구수 3.7만명 |